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의식제고
및 안전활동 향상을 위한 연구

-A Study to improve the safe-activities and the awar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in small business worker.(Focused on the Gwangju industrial complex) -

이 경 훈* · 박 해 천** · 심 민 영* · 조 상 훈*

kyoung hun Lee* · Hai chun Park** · Min Young Sim* · Sang hun Cho*

Abstract

The government separated and establishe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from the Labor Standard law since 1981 to promote the labor's working environment and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laborers. The government made a lot of effort to discharge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by continuous revision of the law thereafter. it i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lear-cut line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due to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 adapted by enterprise's autonomous management. There are frequent industrial disasters o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have financial difficulty and it means this causes much more social cost. Finally, for the improvement of laborer's safety,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in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e need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rough enhancing a government-office's administration and surveillance with the changing mind of a business proprietor. On this paper, w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dministration,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safety and health by means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 조선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 조선대학교 산업공학과

Thereafter we analyze how muc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nd vicarious businesses of safety & health management help. we used the survey method to gather data from 380 laborers directly and analysed the data by SPSS v17.0.

Keywords : Industrial, Safety, law, Health, Environment, Labor, Management

1. 서 론

1-1. 연구배경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복지 및 작업환경, 그리고 안전문제 등의 산업재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1981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분리·제정하였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또한, 법을 집행 및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대행업체에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분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의 감소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표1>은 최근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해통계표에서 년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재해율이나 재해자 수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한 2007년 산업재해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장 1,429,885개의 기업 중 제조업이 247,460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총 재해자 수는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중에서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 전 분야에 걸친 안전·보건의 관리 및 지도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지도가 필요하겠다.

<표1>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분석 표

연도	적용 사업 장수	대상 근로 자수	재 해 자 수					재 해 율 (%)
			계	사망	부상	신 체 장해자	업 무 상 질 병 요양자수	
2003	1,006,549	10,599,345	94,924	2,923	84,261	30,356	7,740	0.90
2004	1,039,208	10,473,090	88,874	2,825	78,154	33,899	7,895	0.85
2005	1,130,094	11,059,193	85,411	2,493	76,518	36,973	6,400	0.77
2006	1,292,696	11,688,797	89,910	2,453	78,343	38,597	9,114	0.77
2007	1,429,885	12,528,879	90,147	2,406	77,292	35,793	10,449	0.72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 대상은 광주지역 공단에 있는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근로자 380명에게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 중 343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 후 직접 기입 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자 응답내용이 부적절한 25명을 제외한 3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실태 조사를 위하여 모두 제조업으로 선택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이며,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10문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수준(14문항), 작업 환경(14문항), 작업 조건(9문항), 대행업체(7문항), 벌칙 수준(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문항들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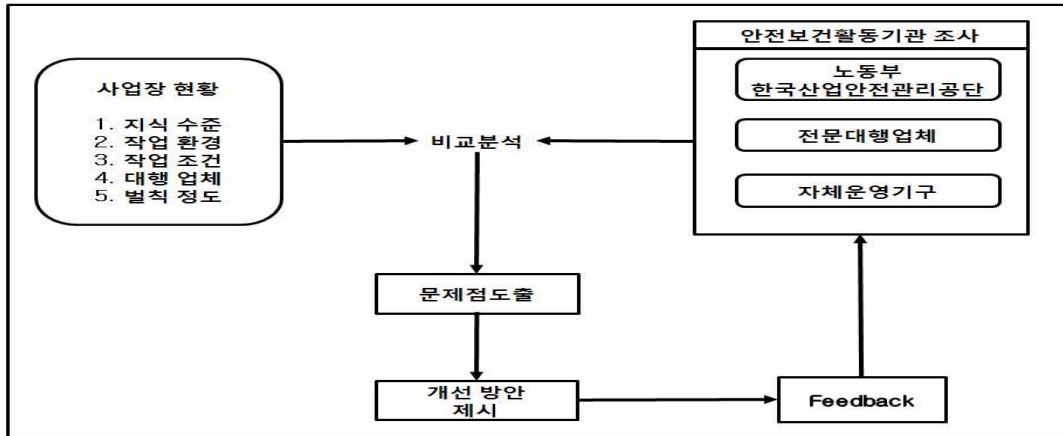
자료의 분석은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검정 및 ANONVA 분석하여 이를토대로 현재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정부기관 및 대행업체의 현재 활동 수준을 비교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1-3. 연구모형

본 연구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 산업안전공단법 등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기업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기관, 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사업장의 실태와 비교·분석하여 사업장과 각 기관들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업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영세 사업장의 조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수준 및 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 환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보호구 및 보호 장비, 작업조건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정부기관 및 대행업체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이용 정도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감사 및 강화정도 그리고 법에 명시된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설문 조사 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노동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구조 및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러한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의 업무를 분담하기위한 안전·보건 관리 및 지도 대행업체(안전협회, 안전경영건설팅)에 대한 활동 및 현재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업장의 실태 수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노동부, 대행업체, 자체운영기구 등에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점 등을 수정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제도 등을 개선 보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림1> 연구모형

2. 안전보건활동 기관 현황

2-1. 정부기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산업안전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87년 노동부 산하에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안전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과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의 점검, 사업장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속한 산업 발달과 더불어 안전문제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라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2009년 3월 현재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6개의 지방청과 40개의 지청, 1개의 출장소와 근로감독과를 운영하고 산하기관으로 안전보건관리공단 본부 외에 6개의 지역본부 및 14개의 지도원, 4개의 산업안전보건센터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산업안전교육원으로 구성되어 다양하고 전문화된 안전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2-2. 대행업체

산업재해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와 신속한 재해예방대책의 수립·집행, 지속적인 관리·지도가 요구되어지나 정부 단독으로 모든 산업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정부에서는 노동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재해예방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내용을 대신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산업재해예방활동의 지원 및 지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은

대한안전협회와 안전경영컨설팅 업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사업장 협조가 미비하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3. 자체활동기구

대기업 또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안전·보건 활동 기구를 두거나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어서 산업재해 감소 및 작업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 부족 및 비용의 부담 등의 이유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안전·보건 활동 업무의 경우 사업주가 담당하거나 근로자가 대부분 중복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3. 연구 분석

조사대상 320명을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5가지의 항목별 문항들에 대하여 각각 분산분석을 통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질문에 대하여 평균 차 검정을 하였다.

3-1.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 및 안전 활동 수준

<표2>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159.075	13	12.237	15.492	0
집단내	3505.358	4438	0.79		

<표2>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 및 안전 활동 수준에 대한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설문지 총 49문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 및 안전 활동 수준을 묻는 질문 14문항에 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간 F값은 15.492로서 유의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항간 서로 상이한 답을 해주었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내용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표3>에서 살펴보면 유의 수준 5%에서 질문 A1, A2, A3, A5, A6, A7, A8, A9, A12, A13, A14 가 매우 유의하였다. 유의한 수준으로 나온 질문의 항목을 가지고 영세 사업장의 수준을 해석하고, 관리직과 생산직의 의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표4>를 확인하면 A8문항에서 평균차가 가장 많이 나고, 또한 A1, A2, A3, A4, A5, A6, A7, A9, A12, A13, A14이 생산직보다 관리직이 더 높게 나왔으나 문항 A10, A11의 경우 생산직이 관리직보다 더 높게 나왔다.

<표3> 직·군간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A1	집단간	19.55	1	19.55	36.414	0	A8	집단간	48.67	1	48.67	58.449	0
	집단내	169.649	316	0.537				집단내	263.132	316	0.833		
A2	집단간	15.831	1	15.831	25.939	0	A9	집단간	37.405	1	37.405	56.381	0
	집단내	192.858	316	0.61				집단내	209.642	316	0.663		
A3	집단간	26.752	1	26.752	40.655	0	A10	집단간	0.7	1	0.7	0.638	0.425
	집단내	207.934	316	0.658				집단내	346.847	316	1.098		
A4	집단간	1.451	1	1.451	2.142	0.144	A11	집단간	0.585	1	0.585	0.648	0.422
	집단내	214.096	316	0.678				집단내	285.457	316	0.903		
A5	집단간	3.484	1	3.484	5.172	0.024	A12	집단간	26.305	1	26.305	32.162	0
	집단내	212.884	316	0.674				집단내	258.448	316	0.818		
A6	집단간	6.528	1	6.528	11.501	0.001	A13	집단간	35.645	1	35.645	48.907	0
	집단내	179.359	316	0.568				집단내	230.308	316	0.729		
A7	집단간	21.961	1	21.961	28.498	0	A14	집단간	8.52	1	8.52	11.32	0.001
	집단내	243.511	316	0.771				집단내	237.848	316	0.753		

<표4> 직·군간 독립 표본 T 검정 표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의 표준오차	하한	상한
A1	등분산	0	0.988	6084	316	0	0.51703	0.08568	0.34845	0.6856
A2	등분산	1.241	0.266	5088	316	0	0.46526	0.09135	0.28553	0.645
A3	등분산	0.371	0.543	6376	316	0	0.60481	0.09486	0.41818	0.79144
A4	이분산	2578	0	1.674	314441	0.095	0.14087	0.08413	-0.0247	0.3064
A5	이분산	9.902	0.002	2624	315676	0.009	0.21827	0.08318	0.05462	0.38191
A6	등분산	0.188	0.665	3.391	316	0.001	0.29876	0.0881	0.12543	0.47209
A7	이분산	4.48	0	6017	310294	0	0.54799	0.09108	0.36878	0.7272
A8	등분산	2.531	0.113	7645	316	0	0.81579	0.10671	0.60685	1.02573
A9	이분산	1088	0.001	7.96	27531	0	0.71517	0.08985	0.53829	0.89205
A10	등분산	3.78	0.053	-0.8	316	0.425	-0.09785	0.12251	-0.3389	0.14319
A11	등분산	35	0.062	-0.81	316	0.422	-0.08943	0.11114	-0.3081	0.12923
A12	등분산	0.185	0.667	5671	316	0	0.59974	0.10575	0.39167	0.80781
A13	등분산	0.224	0.636	6.993	316	0	0.69814	0.09983	0.50173	0.89456
A14	등분산	0.509	0.476	3.355	316	0.001	0.34133	0.10145	0.14173	0.54093

4-2. 사업장 작업환경 수준

<표5>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127.929	13	9.841	13.502	.000
집단-내	3234.435	4438	.729		

<표5>는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관한 질문 항목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이다. 문항 간 F값은 13.502이고, 유의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항 간 서로 상이한 답을 해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표6>은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B1, B2, B4, B7, B8, B9, B11, B12, B13, B14의 문항들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7>은 직·군간 응답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B7 문항에서 평균차가 가장 많이났고, 반면에 B2의 경우 생산직이 관리직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다.

<표6> 직·군간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B1	집단간	8.771	1	8.771	11.963	.001	B8	집단간	5.965	1	5.965	7.091	.008
	집단내	231.685	316	.733				집단내	265.846	316	.841		
B2	집단간	9.470	1	9.470	17.184	.000	B9	집단간	28.887	1	28.887	32.896	.000
	집단내	174.147	316	.551				집단내	277.481	316	.878		
B3	집단간	1.358	1	1.358	2.143	.144	B10	집단간	.752	1	.752	1.091	.297
	집단내	200.318	316	.634				집단내	217.767	316	.689		
B4	집단간	2.608	1	2.608	4.28	.039	B11	집단간	15.683	1	15.683	22.194	.000
	집단내	192.590	316	.609				집단내	223.293	316	.707		
B5	집단간	.732	1	.732	1.497	.222	B12	집단간	28.393	1	28.393	48.180	.000
	집단내	154.575	316	.489				집단내	186.223	316	.589		
B6	집단간	1.942	1	1.942	2.609	.107	B13	집단간	38.166	1	38.166	56.054	.000
	집단내	235.210	316	.744				집단내	215.157	316	.681		
B7	집단간	45.670	1	45.670	58.056	.000	B14	집단간	13.600	1	13.6	20.507	.000
	집단내	248.584	316	.787				집단내	209.560	316	.663		

<표7> 직·군간 독립표본 T 검정

		등분산검정		평균의동일성에대한t-검정					차이의95%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하한	상한
B1	등분산	14.191	.000	3.459	316	.001	.34631	.10013	.14931	.54331
B2	등분산	23.686	.000	-4.145	316	.000	-.3385	.08681	-.53065	-.18806
B3	이분산	.390	.533	1.442	223845	.151	.13628	.09449	-.04992	.32249
B4	등분산	7.083	.008	2.069	316	.039	.18885	.09129	.00924	.36847
B5	이분산	.011	.918	1.213	223239	.226	.10005	.08246	-.06243	.26254
B6	이분산	.279	.598	1.662	253981	.098	.16296	.09808	-.03019	.35611
B7	등분산	27.769	.000	7.619	316	.000	.79025	.10371	.58619	.99431
B8	이분산	.373	.542	2.746	255882	.006	.28560	.10399	.08081	.49040
B9	등분산	11.943	.001	5.736	316	.000	.62848	.10958	.41289	.84408
B10	등분산	7.993	.005	1.045	316	.297	.10139	.09707	-.08960	.29238
B11	등분산	24.599	.000	4.711	316	.000	.46308	.09830	.26968	.65648
B12	등분산	10.686	.001	6.941	316	.000	.62309	.08977	.44648	.79971
B13	등분산	4.204	.041	7.487	316	.000	.72241	.09649	.53257	.91226
B14	등분산	6.776	.010	4.529	316	.000	.43123	.09523	.24388	.61859

4-3. 보호구 및 방호 장치, 작업조건 수준

<표8>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거짓	유의 확률
집단-간	55.618	8	6.952	9.283	.000
집단-내	2134.530	2850	.749		
합계	2190.148	2858			

<표8>은 작업조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분산분석 표이고,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간 F값은 9.283 이고, 유의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항 간 서로 상이한 답을 해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표9>는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C1, C2, C3, C4, C6, C7, C8, C9의 문항들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10> 직·군간 질문에 대한 응답 차를 분석하기위해 독립 표본 T검정 실시 결과 문항 C2에서 차이가 가장 많고, C5의 경우 관리직 보다 생산직이 더 높게 나왔고, 나머지 항목들은 관리직이 생산직 보다 더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표9> 직·군간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거짓	유의 확률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거짓	유의 확률
C1	집단간	15.251	1	15.251	29.307	0	C6	집단간	15.893	1	15.893	24.146	0
	집단내	164.438	316	0.52				집단내	207.993	316	0.658		
C2	집단간	30.473	1	30.473	39.179	0	C7	집단간	11.665	1	11.665	16.56	0
	집단내	245.782	316	0.778				집단내	222.59	316	0.704		
C3	집단간	24.251	1	24.251	30.769	0	C8	집단간	5.615	1	5.615	10.925	0.001
	집단내	249.06	316	0.788				집단내	162.413	316	0.514		
C4	집단간	28.371	1	28.371	37.962	0	C9	집단간	20.617	1	20.617	25.11	0
	집단내	233.915	313	0.747				집단내	259.458	316	0.821		
C5	집단간	0.001	1	0.001	0.001	0.976							
	집단내	236.745	316	0.749									

<표10> 직·군간 독립표본 T 검정

		등분산 검정		평균의동일성에 대한 t-검정				차이의 95% 신뢰 구간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표 준오차	하한	상한
C1	이분산	.676	.412	5.369	228.227	.000	.45666 .08506	.28906	.62425
C2	등분산	18.035	.000	6.259	316	.000	.64551 .10313	.44261	.84842
C3	등분산	7.615	.006	5.547	316	.000	.57585 .10381	.37160	.78010
C4	등분산	7.324	.006	6.161	313	.000	.62451 .10136	.42508	.82394
C5	이분산	.055	.815	-.030	219.663	.976	-.00310 .10337	-.20683	.20064
C6	등분산	10.139	.002	4.914	316	.000	.46618 .09487	.27952	.65283
C7	이분산	.898	.344	4.192	254.977	.000	.39938 .09528	.21175	.58701
C8	이분산	.060	.807	3.395	252.892	.001	.27709 .08162	.11635	.43783
C9	등분산	6.945	.009	5.011	316	.000	.53096 .10596	.32249	.73943

4-4. 지원 기관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표11>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 표

	제공합	df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66.156	6	11.026	14.190	.000
집단내	1724.245	2219	.777		

<표11>은 사업장 지원 기관(정부, 대행업체)에 관한 질문으로서 총 7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지원기관에 대한 질문 7문항에 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간 F값은 14.190 으로서 유의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항 간 서로 상이한 답을 해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표12>는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5% 에서 D1, D2, D3, D4, D5, D7의 문항들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13>은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이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12> 직·군간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거짓	유의 확률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거짓	유의 확률
D1	집단간	12.980	1	12.980	24.461	.000	D5	집단간	11.217	1	11.217	15.304	.000
	집단내	167.681	316	.531				집단내	231.613	316	.733		
D2	집단간	38.465	1	38.465	58.889	.000	D6	집단간	.960	1	.960	1.169	.280
	집단내	206.403	316	.653				집단내	259.333	316	.821		
D3	집단간	46.569	1	46.569	64.611	.000	D7	집단간	2.044	1	2.044	3.066	.081
	집단내	227.761	316	.721				집단내	210.701	316	.667		
D4	집단간	46.660	1	46.660	56.307	.000							
	집단내	261.859	316	.829									

<표13> 직·군간 독립표본 T 검정

		등분산 검정		평균의동일성에 대한t-검정					차이의95%신뢰 구간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하한	상한
D1	이분산	.106	.745	4.788	212.422	.000	.42129	.08798	.24786	.59472
D2	등분산	7.322	.007	7.674	316	.000	.72523	.09451	.53929	.91117
D3	이분산	.654	.419	8.320	258.503	.000	.79799	.09591	.60913	.98685
D4	이분산	.168	.683	7.691	251.391	.000	.79876	.10386	.59422	1.00330
D5	등분산	12.913	.000	3.912	316	.000	.39164	.10011	.19467	.58861
D6	이분산	.051	.822	1.066	224.024	.288	.11455	.10748	-.09726	.32636
D7	이분산	.081	.777	1.697	213.217	.091	.16718	.09850	-.02698	.36135

4-5.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및 규제

<표14>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 표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거짓	유의확률
집단-간	63.263	4	15.816	18.869	.000
집단-내	1332.715	1590	.838		

<표14>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및 규제에 관한 질문으로서 총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질문 5문항에 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문항 간 F값은 18.869로서 유의 확률은 0에 가까움을 알 수 있고, 문항 간 서로 상이한 답을 해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표15>는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5%에서 E1, E2, E4의 문항들이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16>은 각 문항별로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응답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E1, E2, E3, E5의 문항이 관리직이 생산직 보다 높았고, 반면 E4문항의 경우 생산직이 관리직보다 높게나왔다.

<표15> 직·군간 분산분석표

		제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급	거 짓	유 의 확 률			제 합	자 유 도	평 균 제 급	거 짓	유 의 확 률
E1	집단간	13.45	1	13.45	2826	.000	E4	집단간	11.085	1	11.085	17467	.000
	집단내	11.024	316	.478				집단내	2059	316	.635		
E2	집단간	5.552	1	5.552	5.618	.018	E5	집단간	.846	1	.846	.923	.337
	집단내	3234	316	.988				집단내	2976	316	.917		
E3	집단간	1.988	1	1.988	1.870	.172							
	집단내	3595	316	1.063									

<표16> 직·군간 독립표본 T검정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차이의 95%신뢰구간	
		F	유 의 확 률	t	자유도	유 의 확 률. 양 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하한	상한
E1	이분산	12.319	0.001	5.22	221.88	0	0.42957	0.08229	0.2674	0.59173
E2	등분산	0.751	0.387	2.37	316	0.018	0.27554	0.11626	0.04681	0.50427
E3	이분산	21.838	0	-1.264	185.594	0.208	-0.16486	0.13043	-0.4218	0.09246
E4	등분산	0.742	0.39	4.179	316	0	0.38932	0.09315	0.20604	0.57259
E5	등분산	1.935	0.165	0.961	316	0.337	0.10759	0.11198	-0.11274	0.32791

5. 종합적 분석 결과

문항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5개분야 모두 매우 유의하게 나왔고, 생산직과 관리직간의 응답 차가 발생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지식 수준은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생산직이 관리직보다 낮게 응답하였고, 사업장내의 안전 활동이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사업장 작업환경 수준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의 작업시간, 공기질, 작업 강도 및 속도, 작업장 밝기 정도가 생산직 근로자들은 관리자보다 작업 환경에 대한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고, 각종 정보 자료의 비취 상태도 생산직과 관리자보다 관리자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 작업조건은 생산직 근로자들의 작업 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구 및 방호 장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 정도, 보호구 지급 정도, 방호장치의 설치 정도에 대해 생산직 근로자들의 답변은 관리자들에 비해 보호구 및 방호 장치가 미비 하고 작업조건에 열악하다고 답변하였다.

- 지원 기관에 대한 인식도는 생산직의 경우 관리직에 비해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존재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생산직 과 관리직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및 규제에 대한 생산직 근로자들은 관리자들에 비해 처벌 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감사 시행 여부에 대한 답변은 관리직 생산직 모두 잘 알지 못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 정도에 대한 답변은 관리직 생산직 모두 강화되었다고 답변하였다.

6. 결 론

영세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교육 수준은 관리직에 비해 낮았고, 작업 환경 및 작업 조건은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및 대행 업체의 역할 및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규제 및 통제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고,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전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이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재해의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있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행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인력, 장비, 비용 등이 많이 부족하였으며, 정부나 대행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 것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개개의 근로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업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정부기관이나 대행업체의 경우 업체 방문의 횟수가 적으므로 현 사업장 실태를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공단별 산업안전보건 활동 자체기구를 세우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 소속된 기업 모두가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정부기관과 대행업체가 상호 협조 및 지원을 해주고, 정부기관은 이에 대해 정기 감사가 아닌 수시 감사를 시행하여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강력하게 법적 조치 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단에 자체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에 대한 비용, 기대효과, 역할 등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참 고 문 헌

- [1] 김현우, “직군간 작업조건과 안전·보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2] 박준호, “건설업 재해예방 전문지도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 2006
- [4] 노동부, “2003~2007 산업재해분석” 2008
- [5] 강태관, “영세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에 관한 인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6] 권옥선, 정치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 지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 센터, 2001
- [7] 노형진, 정한열, “SPSS에 의한 통계분석 입문”, 한울출판사, 2008
- [8] 양윤권, 소인철, “SPSS 12.0 for Windows 스포츠통계학”, 한국학술정보[주], 2008